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628호 2018. 1. 24.(수)

선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8-12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3
거창군 고시 제2018-1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9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8-110호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거창군 공고 제2018-119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2-10호선)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 32
거창군 공고 제2018-122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4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 35
거창군 공고 제2018-126호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2019년도 사업신청 공고 ····· 38
거창군 공고 제2018-135호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9
거창군 공고 제2018-138호 주상 고대선(205호선)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 51
거창군 공고 제2018-143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3-66호선)사업 외1건 공사완료공고 및 준공필증교부 ····· 54
거창군 공고 제2018-144호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조경분야) 근로자 모집공고(2차) ····· 57
거창군 공고 제2018-145호 2018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산림분야) 근로자 모집 공고 ····· 60
거창군 공고 제2018-155호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4
거창군 공고 제2018-159호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입법예고 ····· 74
거창군 공고 제2018-160호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9

회람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 고시 제2018 - 12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71-383호(1971. 6. 28.)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21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18. 1. 17.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 적 (㎡)	시 점	종 점		
교통시설	당초	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선)	거창	대동	소로	2	21	190	8.0	1,548	거창읍 대동리 757-1	거창읍 대동리 57	건고 1971-383호 (1971. 6. 28.)	'17. 4. 13 ~ '18. 12. 31
	변경	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선)	거창	대동	소로	2	21	190	8.0	1,618	거창읍 대동리 757-1	거창읍 대동리 57	건고 1971-383호 (1971. 6. 28.)	'17. 4. 13 ~ '18. 12. 31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2018. 12. 31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토 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계				**5,162**	**1,548**					당초
계				**5,162**	**1,618**					**변경**
1	거창읍 대동리	757-1	도	628	66		거창군			
			도	628	66		거창군			
2	거창읍 대동리	765-4	도	154	19		거창군			
			도	154	19		거창군			
3	거창읍 대동리	757	대	185	1	거창군 거창읍 시장길 *	최*옥			
			대	185	0	거창군 거창읍 시장길 *	최*옥			
4	거창읍 대동리	964-64	도	62	39		국(건설부)			
			도	62	39		국(건설부)			
5	거창읍 대동리	749-3	대	129	93	거창군 거창읍 강양5길 *	이*호			
			대	129	129	거창군 거창읍 강양5길 *	*종중			
6	거창읍 대동리	756	대	139	58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	윤*임			
			대	139	53		거창군			
7	거창읍 대동리	749-12	답	214	6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	김*출			
			답	214	6		거창군			
8	거창읍 대동리	751-2	대	122	63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	조*권 외 1인			
			대	122	63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	조*권 외 1인			
9	거창읍 대동리	751-8	전	284	106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	조*옥			
			전	284	128		거창군			
10	거창읍 대동리	751-11	전	20	16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	감*규			
			전	20	20		거창군			
11	거창읍 대동리	751-5	대	213	102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	박*제 외 2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대	213	107		거창군			
12	거창읍 대동리	751-10	전	140	140		거창군			
			전	140	140		거창군			
13	거창읍 대동리	751-22	전	15	1		거창군			
			전	15	1		거창군			
14	거창읍 대동리	751-23	전	2	1		거창군			
			전	2	1		거창군			
15	거창읍 대동리	759-8	대	175	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신암동)	정*화			
			대	175	0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신암동)	정*화			
16	거창읍 대동리	749-16	답	63	63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	신*재			
			답	63	63		거창군			
17	거창읍 대동리	751-20	도	171	8		거창군			
			도	171	8		거창군			
18	거창읍 대동리	749-15	도	242	10		거창군			
			도	242	10		거창군			
19	거창읍 대동리	749-6	답	177	167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	신*재			
			답	177	177		거창군			
20	거창읍 대동리	62-6	전	497	497	거창군 거창읍 정장2길 *	김*옥			
			전	497	497		거창군			
21	거창읍 대동리	57	전	720	91	거창군 거창읍 상동6길 *	신*휘			
			전	720	0	거창군 거창읍 상동6길 *	신*휘			
22	거창읍 대동리	56-7	도	810	91		거창군			

○ 지 장 물

순번	소재지	지 번	지장물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품명	구조및규격			주 소	성 명	
1	거창읍 대동리	765-4	주방	조립식(3.6*4)	14.4	㎡	거창군 거창읍 강양5길 *	권*만	
2	거창읍 대동리	"	담장	블록(6.7*1.6)	10.72	㎡	"	"	
3	거창읍 대동리	"	대문	판넬	1.0	식	"	"	
4	거창읍 대동리	"	장독대	-	4.5	㎡	"	"	
5	거창읍 대동리	"	아궁이	-	1.0	식	"	"	
6	거창읍 대동리	"	수도전	-	1.0	식	"	"	
7	거창읍 대동리	751-2	창고	블록판넬(4*2.4)	9.6	㎡	거창군 거창읍 강양5길 *	김*순	
8	거창읍 대동리	"	바닥	con'c (3.8*2.1)	7.98	㎡	"	"	
9	거창읍 대동리	"	창고	조립식(2.2*2.5)	5.5	㎡	"	"	
10	거창읍 대동리	"	가옥	벽돌판넬(10.5*5.6)-(5.6*1.9)	48.16	㎡	"	"	
11	거창읍 대동리	"	심야전기	11Kw	1.0	식	"	"	
12	거창읍 대동리	"	물건이전비	-	1.0	식	"	"	
13	거창읍 대동리	"	수도	-	1.0	식	"	"	
14	거창읍 대동리	"	치자나무	10년	1.0	주	"	"	
15	거창읍 대동리	"	매실나무	15년	1.0	주	"	"	
16	거창읍 대동리	"	제피나무	10년	1.0	주	"	"	
17	거창읍 대동리	"	가죽나무	5년	1.0	주	"	"	
18	거창읍 대동리	"	오가피	10년	2	군	"	"	
19	거창읍 대동리	"	연산홍	10년	1	주	"	"	
20	거창읍 대동리	"	기타수목	10년	2	주	"	"	
21	거창읍 대동리	"	골담초	7년	1	주	"	"	
22	거창읍 대동리	"	기타수목	5년	2	주	"	"	

순번	소재지	지 번	지장물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품명	구조및규격			주 소	성 명	
23	거창읍 대동리	“	화단		12	㎡	“	“	
24	거창읍 대동리	751-2	가옥(공가)	스레이트(6.5*5)	32.5	㎡	거창군 거창읍 강양5길 *	조*권	
25	거창읍 대동리		창고(화장실)	스레트	3.0	㎡	“	“	
26	거창읍 대동리		수도	-	1.0	식	“	“	
27	거창읍 대동리		가추	스레트	4.0	㎡	“	“	
28	거창읍 대동리		담장	-	12.0	㎡	“	“	
29	거창읍 대동리	751-5	담장	블록(8.5*1.7)	14.45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	최*입	
30	거창읍 대동리		창고	스레이트(2.9*1.5)	4.35	㎡	“	“	
31	거창읍 대동리		황금측백	15년	1.0	주	“	“	
32	거창읍 대동리	751-10	차고	조립식(6.5*3)	19.5	㎡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	이*인	
33	거창읍 대동리		담장	4*1.5	6.0	㎡	“	“	
34	거창읍 대동리		감나무	30년	1.0	주	“	“	
35	거창읍 대동리		물앵두	15년	1.0	주	“	“	
36	거창읍 대동리		보리수	20년	1.0	주	“	“	
37	거창읍 대동리	751-20	차고	조립식(경량철골)(5*5)	25.0	㎡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	이*인	
38	거창읍 대동리	749-8	가옥	양철	24.4	㎡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	정*화	
39	거창읍 대동리		가옥	벽돌기와강판(9.3*9)-(1.4*4.7)	77.12	㎡			
40	거창읍 대동리		미용실	조립식강판(3*7.9)	23.7	㎡			
41	거창읍 대동리		대문	철재파이프	1.0	식			
42	거창읍 대동리		담장	13*2	26.0	㎡			
43	거창읍 대동리		마당	콘크리트	35.0	㎡			
44	거창읍 대동리		수도	-	1.0	식			
45	거창읍 대동리		영업권	카라헤어샵	1.0	식			

순번	소재지	지 번	지장물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품명	구조및규격			주 소	성 명	
46	거창읍 대동리		시설 및 물품이전비	-	1.0	식			
47	거창읍 대동리		석류나무	30년	1.0	군			
48	거창읍 대동리		블루베리	3년	6.0	주			
49	거창읍 대동리		기타수목	5년	1.0	주			
50	거창읍 대동리		화단		4.0	㎡			
51	거창읍 대동리	659-2	탱자울타리	12*H1.2	14.4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	김*식	
52	거창읍 대동리		능소화	15년	3.0	주			
53	거창읍 대동리		울타리	철망 30*H1.2	36.0	㎡			
54	거창읍 대동리	664-10	창고 및 화장실	블럭슬레이트	10.9	㎡	거창군 남하면 양곡2길	제*석	

거창군 고시 제2018 - 1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 24.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1길 43 등 5건(부여 5)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1-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33	2009-07-02	2017-01-10	행정구역명(거창+함양군) 활용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80-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동로 190	2009-12-28	2017-01-10	1994년 거창읍시가지 간선도로명 결정에서 유래	
3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851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185-18	2009-12-28	2017-01-10	가북면 용암리를 지나 해인사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179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401-13	2009-12-28	2017-01-10	가북면 용암리를 지나 해인사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353-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1길 11	2009-12-28	2017-01-10	동례길의 시점으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10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말목고개길 222-302	2009-04-01	2017-01-10	북상면 농산리와 위천면 강천리 사이의 말목고개 지명이 반영된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630-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1길 184-7	2009-04-01	2017-01-10	행정구역명 석강을 이용하여 붙여진 첫번째 도로	

거창군 공고 제2018-110호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그 취지에 맞게 규정하고,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 재기재·위배, 유명무실한 조항 삭제(구 2조~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7조, 제19조)

○ 정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사업,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경력 및 실적 인정 등, 사기진작, 실비지급

나.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자원봉사 요청 및 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보험가입에 대하여 법령 취지에 맞게 규정함(안 제7조)

4. 입법예고기간: 2018. 1. 17. ~ 2018. 2. 6. / 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우) 50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 055-940-3143, Fax 940-3089】

○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자치법규명: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2]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

제출연월일	2018. . .
제 출 자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그 취지에 맞게 규정하고,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재기재·위배, 유명무실한 조항 삭제(구 2조~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7조, 제19조)

○ 정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사업,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경력 및 실적 인정 등, 사기진작, 실비지급

나.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자원봉사 요청 및 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보험가입에 대하여 법령 취지에 맞게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0조, 제1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8. 1. 17. ~ 2. 6. / 20일간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분석의뢰

(6)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함.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1.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 군수가 선임
2. 그 밖의 경우: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선임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

② 군수는 센터장을 직접 선임할 경우 면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접은 5명 이내의 심사위원이 하되, 심사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원봉사 요청 및 배치) ①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한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와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의 요청을 받은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인적·물적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의 전공·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단체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라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삭 제> ※ 법 제3조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삭 제> ※ 법 제7조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삭 제> ※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이므로 불필요한 규정임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실효성 없어 삭제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삭 제> ※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 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1.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 군수가 선임 2. 그 밖의 경우: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선임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 ② 군수는 센터장을 직접 선임할 경우 면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접은 5명 이내의 심사위원이 하되, 심사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	<삭 제> ※ 법 제19조, 시행령 제15조

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이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삭 제>
	제5조(자원봉사 요청 및 배치) ①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한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와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의 요청을 받은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인적·물적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의 전공·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자원봉사 진흥 제12조(자원봉사단체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삭 제>

② 협의회의 명칭, 조직,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단체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삭 제> ※ 법 제11조
제15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삭 제> ※ 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제16조(경력 및 실적 인정 등) 군수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삭 제> ※ 법 제11조, 시행령 제16조
제17조(사기진작) 군수는 모범 자원봉사자 또는 제16조에 의한 실적이 우수한자에	<삭 제>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1. 표창 및 국내·외 선진지 시찰 2.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혜택 3. 기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군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라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한다.
제19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①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5조의2(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27.]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7.]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전문개정 2014.1.7.]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 일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추진 시책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4.1.7.]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7.]

제12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7.]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공유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7.]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

으로써 설립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7.]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20조(벌칙)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에 따른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5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3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자원봉사단체 그 밖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자의 선정절차와 훈격은 「상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교육훈련)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관련 교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2.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나 사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원봉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②협의회의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③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⑥협의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②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특별시·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⑥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공헌 인정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실적 정보를 수집(자원봉사활동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저장·보유·가공·제공(자원봉사활동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

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4.7.7.]

□ 법제처 발굴 과제

조항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제9조 제7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조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자는 센터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자가 센터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조례에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됨.	해당 규정 삭제
제18조 제2항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가입의 주체는 군수임. 군수가 보험 가입하는 것이므로 군수가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실제 보험가입업무를 센터에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 처리 절차에 불과함.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는 규정 삭제

거창군 공고 제2018 - 119호

도 시 계 획 시 설(교통시설:중로2 - 10호선) 실 시 계 획 인 가 를 위 한 공 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2-10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19.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 적 (㎡)			
도시계획시설	방주아트빌 주변 도시계획도로 (중로2-10호선)	거창	가지 중앙	중로	2	10	387.6	15.0	5,235	거창읍 중앙리 458-2번지	건고194호 (1976.2.7)	2018.1~ 2019.12.31

2. 사업 시행자 :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3. 사업 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중로 2 - 10호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	(㎡)	성 명	주 소	권리명	권리자	
계				36,115	5,269					
1	거창읍 중앙리	458-2	전	513	401	김*식	상동41-6			
2	"	460	전	1,714	643	손*순외1	거창군 거창읍 거올로4길 100	근저당	******농업협동조합	
3	"	460-2	전	661	224	정*분	거창군 거창읍 죽전길 77-3			
4	"	461-2	전	1,613	66	오*균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4길100	근저당	***** 협동조합	
5	"	460-3	전	599	394	오*균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4길100			
6	거창읍 가지리	243	답	1,135	582	황*권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279			
7	"	242	전	1,560	52	백*자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96-1			
8	"	240	답	1,102	764	김*락	거창군 남상면 한산1길 146	근저당	***** 협동조합	
9	"	239	천	2,274	352	거창군				
10	"	238	천	886	426	거창군				
11	거창읍 중앙리	472-2	전	1,018	67	거창 고등학회	거창군 거창읍 하동 387			
12	거창읍 가지리	1699	도	648	5	국토교통부				
13	거창읍 중앙리	472-1	대	597	33	정*수	하동 350-5			
14	거창읍 가지리	237	천	2,056	295	거창군				
15	"	1700	천	18,913	691	국토교통부				
16	거창읍 중앙리	473-2	전	826	274	거창 고등학회	387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 [우편번호 : 670-870/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이나 전화(055-940-3594), FAX(055-940-3579), E-mail : sbin021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거창군 공고 제2018 - 122호

도 시 계 획 시 설(교통시설:소로2 - 4호선) 실 시 계 획 인 가 를 위 한 공 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4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 적 (㎡)			
도시계획시설	변경	도시계획도로 (소로2-4호선)	거창	대동	소로	2	4	97.0	8.0	879	거창읍 대동리 664-19 ~ 거창읍 대동리 657	경상남도 고시 1977-256호 (1977.04.25)	2018.01~ 2018.12.31

2. **사업 시행자** :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

3. **사업 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소로 2-4호선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변경(분할 후)		8,644	879					
1	거창읍 대동리	657	답	521	86		거창군			
2	거창읍 대동리	659-2	답	66	46		거창군			
3	거창읍 대동리	660	답	129	89		거창군			
4	거창읍 대동리	664-19	답	120	120		거창군			
5	거창읍 대동리	630-4	대	64	64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445	이현봉			
6	거창읍 대동리	630-2	도	23	23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30-2	유기순			
7	거창읍 대동리	631-2	대	1	1		거창군			
8	거창읍 대동리	656-1	도	40	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0 미켈란쉐르빌 C-2005	송연수외4명			
9	거창읍 대동리	630-5	대	9	9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445	이현봉			
10	거창읍 대동리	656-8	대	5	5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49-5	진성태			
11	거창읍 대동리	659-1	도	7	7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30	유준이			
12	거창읍 대동리	629-2	도	7	7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29-2	신용진			
13	거창읍 대동리	960-1	도	7,368	98		국(교통부)			
14	거창읍 대동리	666-18	잡	69	69	거창군 거창읍 노혜 2길 100-41	정철윤			
15	거창읍 대동리	664-31	전	182	182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8길57,104동 1111호	서경자			
16	거창읍 대동리	664-32	대	26	26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64	진유복			
17	거창읍 대동리	664-30	전	7	7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64-10	제갈민석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670-870/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이나 전화(055-940-3593), FAX(055-940-3579), E-mail : abun1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거창군 공고 제2018-126호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2019년도 사업신청 공고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 서비스 제공,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신청을 공고하오니 2019년도에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등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1월 19일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2018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2. 지원대상: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촌공동체회사(법인 또는 단체)
   * 농촌의 자연 자원, 농산물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한 경영활동을 통해 농촌에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사업비: 개소 당 최대 50백만원(국고 25, 지방비 12.5, 자부담 12.5)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 등
   나. 사회서비스 유형에 한해 인건비 등 경상경비 지출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인건비(최대 135만원/월·인) 등 경상경비 지출 가능
5. 시청기간: 2018년 1월 26일까지
6. 신청 절차 및 양식: 붙임 사업지침서 참조
7. 향후계획: 경상남도 사업신청자 추천(2018.2.5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담당(☎055-940-81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18 - 135호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에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거창군 농업인회관에 대한 개수·보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창군 농업인회관 개수·보수비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10호, 별표)

- 지원율 100퍼센트 이내

3. 입법예고기간: 2018. 1. 22. ~ 2018. 2. 12.(22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농업축산과장,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우편번호 50147〕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팩스[940-8119], 전화[940-8123] 또는 E-mail[dlwhdthq@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자치법규명: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

제출연월일	2018. 01. .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에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거창군 농업인 회관에 대한 개수·보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창군 농업인회관 개수·보수비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1항 제10호, 별표)

- 지원율 100퍼센트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

나. 예산조치: 2019년 1회 추경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예산담당)

※ 예산: 제1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예정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8.1.22.~ 2. 12.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평가의뢰

(6) 도내 개정현황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중 “지원”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인재육성”을 “인재육성 사업”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지원”을 “육성사업”으로, 같은 항 제8호 중 “지원”을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의 개수·보수 사업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사업의 지원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 2.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강화 지원 3. 원예농산물 FTA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4.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지원 5.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재 육성 6.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7.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지원 8.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9. 제3조의2에 따른 지원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 <신 설>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보조사업의 지원범위)** ① --- --- --- 1. --- ----사업 2. --- -------사업 3. --- ---------사업 4. ----------사업 5. ----------인재 육성 사업 6. ----------사업 7. ----------육성 사업 8. ----------지원 사업 9.--- ------- 10.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의 개수·보수 사업 ② --- ---

[별표] 농어업보조금 지원 세부사업(제4조 관련)

지원분야	세부사업 내용	지원율 (퍼센트)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사업**	가축 개량·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	50~100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개발·판매 등의 ~~지원~~ 사업	50~100
	축산물 위생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50~70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 사업	50~70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에 필요한 ~~지원~~ 사업	50
	내수면수산자원의 조성 보호, 생산시설·생산성 향상 및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과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보급에 관한 ~~지원~~ 사업	50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	친환경·고품질·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농자재 지원 사업	50~100
	식량작물 신기술보급 시범·연구 ~~지원~~ 사업	70~100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지원~~ 사업	70~100
원예농산물 FTA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사업**	원예·특작 신기술보급 시범·연구 ~~지원~~ 사업	50
	유망 신품종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	70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지원~~ 사업	50
	지역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50
	지역적용 및 특화가능한 작물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50
	농업경영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50
	농기계 보급,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사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50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사업**	지역대표 먹거리 개발·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각종 광고, 행사, 가격할인, 장비·포장재 지원 사업	50
	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메뉴, 브랜드, 컨설팅, 마케팅, 위생용품지원, 행사 ~~지원 사업~~	50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지원~~ 사업(농촌민박, 관광농원, 휴양단지개발 등)	50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운영, 보험가입, 교육, 노후 체험시설, 마을사무장 ~~지원~~ 사업	100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지원~~ 사업	100
	시설, 장비, 가공비, 포장재 등 농산물 가공과 6차	50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벤처 농어업인 육성 ~~지원~~ 사업	70
	수련회, 연찬회, 워크숍, 교육, 중앙 및 도대회 참가 등 농업관련 단체의 활성화 ~~지원~~ 사업	70~100
	농업전문인력양성(농어업인교육, 농촌여성교육, 품목별 연구회 육성)~~지원~~ 사업	100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100
농산물 수출 진흥 및 해외 시장 개척 **사업**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행사, 바이어 발굴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50
	수출 촉진 관련 교육, 컨설팅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50~100
	농산물 수출 물류비, 포장재 등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100
	수출농가, 업체 등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사업	50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	농산물 공동규격출하에 따른 시설 및 운영 지원 사업	50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 시설, 장비 등 지원 사업	50~70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품질관리 및 포장재, 마케팅 지원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50~100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및 생산 이력 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100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	100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0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의 개수·보수 사업	**거창군 농업인회관 개수·보수 사업**	**100**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17.10.24.] [법률 제14919호, 2017.10.24.,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12.29., 타법개정]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11.28.>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2017.7.26.>

[제목개정 2014.11.2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647호, 2017.3.2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6.22.]

제48조(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 생산여건, 농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조(목적)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의 교부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어업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일부 개정된 조례안의 신설 규정은 신설 규정목적이 농업인회관 유지보수를 위한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으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4. 작성자

거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거창군 공고 제2018 - 138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주상 고대선(205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월 22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주상 고대선(205호선) 확포장공사
나. 위 치 : 경남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일원
다. 사업내용 : 도로정비 L=132.0m, B=7.0m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건설과장)

2. 보상내용

가. 토 지 : 경남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일원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건설과(도로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토지는 확인 가능함.

3.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01.22 ~ 2018.02.06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055-940-3557)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보상시기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 보상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창군청 건설과(하천담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로 갈음하며, 이해관계인은 권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등 권리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거창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과 지번은 추후 지적 분할 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055-940-35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조서(토지명세)

일련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읍,면		리,동	본번	분할	대장상	현실상	대장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1	거창	주상	거기	664-3	664-10	답	답	902	43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	김봉*
2	거창	주상	거기	646	646-2	답	답	1,988	8	거창군 주상면 고대길 **-**	배갑*
3	거창	주상	거기	514-1	514-5	하천	하천	2,037	50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	김규*
4	거창	주상	거기	647	647-1	답	답	304	157	거창군 주상면 고대길 **-**	배갑*
5	거창	주상	거기	482	428-1	전	전	1,068	72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	김재*
6	거창	주상	거기	512-1		답	답	5	5	거창군 주상면 고대길 **-**	배갑*
7	거창	주상	거기	82	82-2	전	전	941	98	거창군 주상면 고대길 **	이숙*
8	거창	주상	거기	511-1	511-4	도로	도로	99	64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	배환*
9											
10											
합계									497		

거창군 공고 제2018 - 143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66,2-81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5-170호(2015.12.24.)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66호선)외 1개 노선 사업이 완료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8. 01. 23.

거 창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29-20번지 일원(소로3-66호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06-4번지 일원(소로2-81호선)

2.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종류	사 업 명	위 치	시 행 규 모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 적 (㎡)		
군계획시설: 교통시설	정장리 도시계획도로 (소로3-66호선)개설공사	거창읍 정장리 929-20번지 일원	소로	3	66	268	6.0	1,761	경고 제465호 (1992.12.24.)	2015.12.23 ~2017.09.08
	중앙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81호선)개설공사	거창읍 중앙리 406-4번지일원	소로	2	81	98.5	8.0	851	경고 제103호 (1978.03.20.)	2016.11.04 ~2017.09.08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4.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필증

귀하(중)께서 제출하신 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신청인	성 명	거창군수	법인등록번호	611-83-00012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준 공 내 용

사 업 명 칭	정장리(소로3-6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 업 목 적	군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긴급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 업 위 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29-20번지 일원			사 업 량		L=268.0m, B=6.0m		
시 행 방 법	신청인 직영			시행기간		2015. 12. 23. ~ 2017. 12. 31.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구	과	대	도	전	임야	합 계
	면 적	184	55	710	603	148	61	1,761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도로						
	면 적	1,761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도로						
	개 요	1,761						
소요 사업비	727백만원			공사완료일		2017. 9. 8.		

2018년 1월 23일

거 창 군 수

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필증

귀하(중)께서 제출하신 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신청인	성 명	거창군수	법인등록번호	611-83-00012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준 공 내 용

사 업 명 칭	중앙리 도시계획도로(소로2-81호선) 개설공사							
사 업 목 적	군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긴급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 업 위 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06-4번지 일원			사 업 량		L=98.5m, B=8.0m		
시 행 방 법	신청인 직영			시행기간		2016. 11. 4. ~ 2017. 9. 8.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구	답	대	도	전	임야	합 계
	면 적	-	815	9	27	-	-	851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도로						
	면 적	851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도로						
	개 요	851						
소요 사업비	410백만원			공사완료일		2017. 9. 8.		

2018년 1월 23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공고 제2018 - 144호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조경분야) 근로자 모집 공고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조경관리단, 산림경관관리단)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거 창 군 수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연번	사업명	채용인원	주요업무내용
계		23	
1	조경관리단	15 (남 9, 여 6)	가로수 및 녹지공간 관리(풀베기, 전정 등) 생활권 내 재해위험목 제거 등
2	산림경관관리단	8 (남 5, 여 3)	가로수 뒤 도로법면 및 연접산림 잡목·덩굴류 제거 등

2. 근 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3. 근로조건

○ 근로기간: 2018. 3월 ~ 11월(예산범위 내)

○ 보수수준: 1일 60,240원(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 실제 근무일수에 한하여 부대경비 3,000원 지급

※ 출·퇴근 및 작업 장소 이동에 따른 수당 미지급

○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하절기,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 가능

○ 기타사항: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지급

○ 근무부서: 산림과 공원녹지담당(근로지역: 거창군 전역)

4. 신청자격

- ○ 거창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공고일 기준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을 가진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 ○ 산림(조경)관련 기술자, 경력자 가점 부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 ○ 임업기계 사용·운반 등 원활한 근로를 위한 차량소지자 가점부여
- ○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장년층 우선선발
- ○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른 신청자격제한에 대하여 적합한 자**[붙임참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 접수기간: 2018. 01. 25.(목) ~ 01. 29.(월) / 3일간
- ○ 원서교부 및 접수처: 거창군청 산림과(공원녹지담당)

  ※ 응시원서는 거창군청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고시·공고」란 채용 공고문에 첨부
-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 직접제출**
- ○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첨부 동의서 미제출시, 자격, 소득, 재산 등의 선발기준 확인 서류는 별도 제출(미제출시 최저점 부여)

  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최종시험 합격자에 한함, 개별통보 예정)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서류심사 등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비용절약을 위해 대상자 예비 선정 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상이 있을시 선발 배제

  다. 주민등록 등본 1부(주소이력사항 기재,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분)

  라.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마. 구직등록증

6. **채용방법 및 일정:** 서류전형 및 면접

○ 채용방법: 공고 후 응시자에 한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결격사유 조회, 일모아시스템 조회 등)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02. 05.(월)예정, 개별통보

나. 제2차 시험: 면접 및 실기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시: 2018. 02. 07.(수) 예정,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18. 02. 09.(금) 예정,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원 신체검사서 제출, 이상 없을 시 사역

7. 기타사항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폰 등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고,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합격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반환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1차 공고기간 내 신청·접수하여 불합격 통보 받으신 분은 재신청 불가하며, 향후 참여자 부족으로 인한 추가 선발계획이 있을 시, 기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산림과 공원녹지담당(☎055-940-34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18 - 145호

2018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산림분야) 근로자 모집 공고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산림자원조사단, 명상숲 코디네이터)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거 창 군 수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연번	사업명	채용인원	주요업무내용
계		16	
1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14 (남6,여8)	숲가꾸기사업 및 산물수집, 덩굴제거 등
2	숲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1 (남,여)	숲가꾸기 대상지 조사 및 DB자료 구축 등
3	명상숲 코디네이터	1 (남,여)	도시숲·명상숲 내 수목관리 및 환경정비

2. 근 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및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에 의함

3. 근로조건

○ 근로기간: 2018. 3월 ~ 12월(예산범위 내)

○ 보수수준: 1일 60,240원(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 출·퇴근 및 작업 장소 이동에 따른 수당 미지급

○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하절기,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 가능

○ 기타사항: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지급

- 사역 후 기술교육 및 안전교육 의무 이수(1~2주 합숙)

○ 근무부서: 산림과 공원녹지담당(근로지역: 거창군 전역)

4. 신청자격(공통)

○ 거창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기준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을 가진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 산림(조경,식물)관련 기술자, 경력자 가점 부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 산림관련 고교·대학 졸업자

○ 임업기계 사용·운반 등 원활한 근로를 위한 차량소지자 가점부여

○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장년층 우선선발

○ 기타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및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른 신청자격제한에 대하여 적합한 자**[붙임참고]**

5. 우선선발(사업별 상이)

○ 공통사항: 참여비율 조정(취약계층45% 장년층 70% 청년층20%)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 산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현장·행정업무 지원이 가능한 자
- 산림사업 관련 DB구축에 필요한 시스템(PC) 활용이 가능한 자

○ 명상숲코디네이터

- 숲과 관련된 시민단체 및 조경업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명상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현장·행정업무 지원이 가능 한 자
- 명상숲 관련 DB구축에 필요한 시스템(PC) 활용이 가능한 자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2018. 1. 25.(목) ~ 01. 29.(월) / 3일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거창군청 산림과(공원녹지담당)

※ 응시원서는 거창군청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고시·공고」란 채용 공고문에 첨부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u>근무시간 내 직접제출</u>

○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첨부 동의서 미제출시, 자격, 소득, 재산 등의 선발기준 확인 서류는 별도 제출(미제출시 최저점 부여)

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최종시험 합격자에 한함, 개별통보 예정)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서류심사 등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비용절약을 위해 대상자 예비 선정 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상이 있을시 선발 배제

다. 주민등록 등본 1부(주소이력사항 기재,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분)

라.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마. 구직등록증

7. 채용방법 및 일정

○ 채용방법: 공개채용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결격사유 조회, 일모아시스템 조회 등)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02. 05.(월)예정, 개별통보

나. 제2차 시험: 면접 및 실기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시: 2018. 02. 07.(수) 예정,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18. 02. 09.(금) 예정,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원 신체검사서 제출, 이상 없을 시 사역

8. 기타사항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폰 등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

임으로 하고,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합격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반환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1차 공고기간 내 신청·접수하여 불합격 통보 받으신 분은 재신청 불가하며, 향후 참여자 부족으로 인한 추가 선발계획이 있을 시, 기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산림과 공원녹지담당(☎055-940-34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18-155호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2. 일부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조례로 재기재하여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 취지에 맞게 목적규정 정비함: 조례 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함: 조례 안 제2조

다. 법령 재기재사항인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정비함: 안 제3조

라. 위원회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 바로잡음: 조례 안 제5조

마.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신설함: 조례 안 제5조의2

바. 수당규정 삭제함: 조례 안 제10조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2018. 1. 24. ~ 2018. 2. 13. / 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 전　　화: 055-940-3093
- 팩　　스: 055-940-3089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940-30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

제출일자	2018. . .
제 출 자	복지정책과장

1. 제안 이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조례로 재기재하여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 취지에 맞게 목적규정 정비함(안 제2조)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의 취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함.

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함(안 제2조)

○ 근거법령을 인용하고,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자구 수정함.

다. 법령 재기재사항인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정비함(안 제3조)

○ 법령 규정사항이 아닌 부위원장 선출방법 규정함.

라. 위원회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 바로잡은(안 제5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 시 미리 지명한 아동위원이 대행

⇒ 위원이 대행

마.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신설함(안 제5조의2)

바. 수당규정 삭제함(안 제10조)

○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근거: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8. 1. 24. ~ 2018. 2. 13.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분석의뢰 중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시행
2. 장애인복지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
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제도 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부위원장)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제2항 중 “아동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8조 중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두고, 간사는 군수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기능)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시행 2. 장애인복지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 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제도 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부위원장)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생 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아동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위원**----------
<신 설>	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 8 조 (간 사) ---------- ----------두고, 간사는 군수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 법제처 협업과제

조문 및 내용	문제점	개선안	유형
(제3조제3항)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으로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장애인관련 단체의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정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할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정할 경우 법령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 특히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의 경우에 전문성과 관련없이 추천한 의원이라는 이유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이 될수 있도록 정할 경우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지식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이 되도록 규정한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규정하여야 함.	제3조제3항을 삭제 검토.	상위법령 위반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70호, 2017.12.19.,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12.30.] [대통령령 제28410호, 2017.10.31., 일부개정]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거창군 공고 제2018-159호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2. 일부개정이유

상위법령 위배 및 재기재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규정 삭제: 조례 안 제3조

나. 계약기간 3년 규정 삭제: 조례 안 제6조제2항

다. 계약자의 의무 규정 삭제: 조례 안 제7조

라. 계약의 해지 규정 삭제: 조례 안 제8조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2018. 1. 24. ~ 2018. 2. 13. / 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 전　　화: 055-940-3094
- 팩　　스: 055-940-3089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940-30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 ~

제출일자	2018. . .
제 출 자	복지정책과장

1. 제안 이유

상위법령 위배 및 재기재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규정 삭제(안 제3조)

○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설치 허가에 있어 상위 법령에 있으면 당연히 우선 적용 되므로 실익이 없어 삭제

○ 매점 면적제한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배로 삭제

나. 계약기간 3년 규정 삭제(안 제6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되어있어 법령위배

다. 계약자의 의무 규정 삭제(안 제7조)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행관리 규정 삭제(안 제7조)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라. 계약의 해지 규정 삭제(안 제8조)

○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계약의 해제·해지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8. 1. 24. ~ 2018. 2. 13.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분석의뢰 중

(6) 도내 개정 완료(3): 사천, 진주, 의령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에만 한정한다.	<삭 제>
제6조(우선계약) ① 기관장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르고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제6조(우선계약)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관리·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기관장이 결정한다.	<삭 제>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 관리를 게을리한 경우 3.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삭 제>

4. 공익상 필요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폐지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령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조문 및 내용	문제점	개선
(제3조)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에만 한정함**	「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1항에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그 대상시설의 규모에 대하여 제한을 두거나 조례로 대상시설의 규모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데**, 이 조례에서는 매점의 규모를 15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하여 우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구 「장애인복지법시행령」(대통령령제24513호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함)제27조제1항의**면적제한규정은장애인의생업지원을확대하기위하여2013.4.22. 삭제**되었음	면적제한 문구 삭제
(제6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관리·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기관장이 결정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어긋남**	상위법령에 맞게 계약기간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수정
(제7조)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제7조단서 삭제

	조례에서는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됨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7.9.19.] [법률 제14892호, 2017.9.19., 일부개정]

제42조(생업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12.30.] [대통령령 제28410호, 2017.10.31., 일부개정]

제27조(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13.4.22.>
② 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2.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노인복지법」
[시행 2017.9.15.] [법률 제14596호, 2017.3.14., 일부개정]

제25조(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48호, 2016.12.20., 일부개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0.31.] [법률 제15028호, 2017.10.31., 일부개정]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1.14.] [대통령령 제28438호, 2017.11.14., 일부개정]

제88조의3(생업지원) ① 법 제6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삭제 <2013.10.30.>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이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단서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본조신설 2008.9.26.]

[제목개정 2013.10.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8.5.1.] [법률 제15030호, 2017.10.31., 일부개정]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점의 규모, 운영 및 허가·위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제10조의2(생업지원)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단서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전문개정 2008.10.20.]

[제목개정 2013.10.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9.22.] [법률 제14608호, 2017.3.21., 일부개정]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47조의6(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전문개정 2010.9.27.]

[제47조의5에서 이동 <2014.2.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2015.1.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1.7.,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4.1.7., 2015.1.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8.6.]

거창군 공고 제2018-160호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2. 개정이유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의 층이라는 의미인 “계층”이라는 용어를 순화하여 계층간 위화감 등을 해소하여 이 조례의 입법 취지를 강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 취지에 맞게 용어 순화: 조례 안 제1조~제3조

나.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 조례 안 제2조

다. 보험료 지원대상 정비함: 안 제3조

라. 법령위배 소지 지원 예산확보 규정 삭제: 조례 안 제7조

4. 개정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2018. 1. 25. ~ 2018. 2. 14. / 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 전　　화: 055-940-3133
- 팩　　스: 055-940-3089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 940-31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 ~

제출일자	2018. . .
제 출 자	복지정책과장

1. 제안 이유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의 층이라는 의미인 “계층”이라는 용어를 순화하여 계층간 위화감 등을 해소하여 이 조례의 입법 취지를 강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순화함(안 제명, 제1조~제3조)

○ 저소득**계층** ⇒ 저소득**주민**

나.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 조례에서 한 번만 나오는 용어는 정의에서 삭제하고 제3조 지원대상에서 직접 규정함

○ 보험료, 저소득주민 용어 정의 정비

다. 보험료 지원대상 정비함(안 제3조)

○ 정비: 한부모세대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세대” 용어 사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삭제

라. 법령위배 소지 지원 예산확보 규정 삭제함(안 제7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 근거:「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장애인복지법」제3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5조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8. 1. 25. ~ 2. 14.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를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저소득계층에 대하여”를 “저소득주민에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험료가 월 10,4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저소득주민에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계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부과액 합산금액이 월 10,4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2.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5. “소년소녀가장세대”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세대와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조손세대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험료가 월 10,4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들 둔 저소득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

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삭 제>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15.3.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2015.6.22., 2017.2.8.>

② 삭제 <2017.2.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5.6.22., 2015.12.2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2.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2015.12.29., 2017.2.8.>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